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 세무담당부서(장)
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·공포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통령령 제32719호(2022.06.28.)로 일부 개정·공포된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 「정보마당-법령정보」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률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개정내용

-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개별소비세 탄력세율(5→3.5%) 적용을 2022.12.31.까지 연장

참고 : 기본 개별소비세율(5%)과 탄력세율 적용 개별소비세율(3.5%)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적용.(시행령 제2조의 2)

※ 붙임 :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: 회원사 전체

담당자	대리	부장	실장	상무	이사장
	박종우	김진석	박상광	성정현	배준영
시행	서자대조22-1231	(2022.06.28.)	접수	-	()
우	06664	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2길 18 (4층, 카렌탈비즈니스센터)	/ www.scra.or.kr		
전화	(02) 525-9082	전송 (02) 525-9063	/	pjw@scra.or.kr	/ 공개

[붙임]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(발체)

○ 주요내용

-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(5→3.5%) 적용을 '22.12.31.까지 연장

<신·구 대비표>

현 행	개 정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<부칙>	개별소비세법 시행령 <부칙>
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)	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)
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2022년 6월 30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①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2022년 6월 30일</u>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	②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 ----- -----.